

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70
------	-----

2009년 2월 25일
교육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년 1월 30일, 이지현 의원 외 9인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2월 4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(2009년 2월 13일,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 (2008. 6. 13.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임)으로 인하여 동법 제31조제2항에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,
-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인하여 '문화재기술위원회'와 관련된 조문이 삭제(2008.9.26.)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「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표기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(안 제18조 및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서식)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기존 조문을 삭제함(제18조).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「정비기준」에 따라 우리말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꿈 (안 제3조제3호 및 4호, 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17조, 안 제19조, 안 제20조, 안 제22조, 안 제23조, 안 제24조, 안 제28조, 안 제29조, 안 제30조, 안 제31조, 안 제37조, 안 제43조, 안 제45조, 안 제46조, 안 제47조, 안 제51조).
- 일부 표현상 오류를 전반적으로 정비함(안제3조1호, 안제15조제5항, 안 제26조, 안 제37조1항).
- 전문위원의 수를 문화재위원의 수에 맞게 4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함(안 제40조제1항).
-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은 삭제함(제52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과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「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수정함.
- 금번 일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의 경우, 법 개정 전까지는 문화재청의 지정사항이었으나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정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임. 서울의 경우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동물이 거의 서식하고 있지 않아 기 지정받은 민간동물치료소의 치료실적은 거의 없으며, 2004년도에 지정 받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치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경미한 치료 실적이 있을 뿐임.
- '정부위원회 정비계획'(2008.5.27)에 의거 문화재청의 '문화재기술위원회'와 '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'가 폐지됨에 따라,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

동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(제20조)을 삭제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18조를 삭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유명무실했던 문화재기술위원회 관련사항이 정비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토론요지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